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Focus vol. 11



한 · 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농식품 대미 수출영향 분석

- 1. 미국 수출현황 및 한·미 FTA 농수산분야 양허내용 2.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
- 3. 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

2011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농식품 대미 수출영향 분석

I. 미국 수출현황 및 한·미 FTA 농수산분야 양허내용	3
Ⅱ.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	4
Ⅲ. 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	5
* 참고	15

미국 수출현황 및 한·미 FTA 농수산분야 양허내용

- ◈ 한국산 농수산식품 대미 수출실적은 '10년 기준 5.2억불 수준
- ◈ 현재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따른 협상 체결시, 대미 주요수출 품목의 관세는 즉시 또는 5년이내 철폐되나 현행관세율(평균9.4%)이 낮아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 한미FTA 주요추진현황 : 협상타결('07.4.2) 및 공식서명('07.6.30) → 추가협상 타결 ('10.12.3)
 - → 미국 상·하원 본회의 통과('11.10.12) → 한국 국회 통과('11.11.22) → 2012.1.1 협정 발효
- * 현재 한국측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통한 추가보완대책 협의중

□ 대미 한국산 농산물 수출현황

- 2010년 對미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5.2억불 수준이며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의 8.8%의 비중을 차지
 - 수출실적 : 519백만불(농산 348, 수산 142, 축산 16, 임산 13)
 - 주 수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42.4백만불), 권련(31.3), 배(25.4), 음료(25.1), 김(23.5), 라면(19.8), 이빨고기(18.0), 굴(17.4), 비스킷 (16.3), 소주(9.0) 등임
 - * 과실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은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수출실적 미미

□ 농수산분야 주요 양허내용(요약)

- 농산물 : 품목수 기준 58.7%(한국산 수입액 기준 82.0%)관세 즉시 철폐
 - 즉시 관세철폐 품목 :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등
 - * 아이스크림, 버섯 등 기타 품목(22.7%)은 대부분 5년이내 관세 철폐

П

- 수산물 : 우리측 민감 수산물(민어, 고등어, 넙치류, 명태 등)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도입 등
 - 대부분의 對미 수출 수산물은 관세가 없거나, 즉시철폐 적용 〈대미 한국 농산물 양허유형〉

아닌 오점	품목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기준
양허 유형	개수(개)	비중(%)	수출액(억불)	비중(%)
즉시	1,065	58.7	1.8	82.0
2~3년/5년	10/401	0.6/22.1	0/0.05	0.1/2.0
6~7년/9~10년	92/180	5.1/9.9	0.3/0.05	13.8/2.0
10년 초과	65	3.6	0	0.0
합계	1,813	100	2.3	100

^{*} 계절/현행관세, 제외항목 없음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

-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대상품목이 한정적 이므로 즉각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비관세장벽(검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강화로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대부분의 농식품 현행관세는 없거나, 평균 9.4% 수준
- ◆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확대효과는 5백만불 정도에 불과하나 관세 인하 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최근 對미 수출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 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효과 : 권련, 배, 김, 라면 등의 즉시철폐 품목의 합으로 추정
- □ 간장·BBQ소스(6.4%) 및 라면(6.4%), 버섯류(20%)등은 관세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현지시장개척노력에 따른 對미 수출확대 기대
- □ 주요 부류별 수출전망
 - (음료・과자류) 최근 음료 및 과자류에 대한 對미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음료의 경우 현행관세가 0.2¢/ℓ로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소스류) 된장, 고추장 등은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확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간장, BBQ소스(6.4%)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
- (기타 신선농산물)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신선농산물 대미 수출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검역협상 및 신선도 유지, 품위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수산물) 현재 미국 수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가 낮아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나, 다랑어(기름담근것),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과 같은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품목개발

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

1 과실류(사과, 배, 단감, 감귤)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mathbf{II}

품목	미국			대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배 (08.08.20.0000)	0.3센트/kg (7/1~다음해 5/31, 이외기간 0%)	즉시철폐	45	10년 균등철폐 20년(동양배 품종)
사과 (08.08.10.0000)	_	_	45	10년 균등철폐 20년(후지 품종)
단감 (08.10.90.2000)	2,2	즉시철폐	45	10년 균등철폐
감귤 (08.05,20,1000)	1.9 센트/kg	즉시철폐	144	15년 균등철폐

○ 과실류 주 수출품목(사과, 배, 단감, 감귤)의 기존 관세는 미미하며 (0.3센트/kg~2.2%) FTA 체결로 즉각 철폐됨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對미 과실류 수출동향
 - '10년 기준 대미 과실류 수출실적은 35,326천불로 주 수출품목은 배(25,413)임
 - '10년 사과, 감귤의 검역 협상 완료로 신선 과실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수출전망

- 과실의 미국수출은 관세보다는 검역 및 농약 안전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FTA 체결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배 : 수출단지지정 및 사전 검역 / 사과(후지) : 40일 저온저장 후 훈증 / 감귤 : 선별장 승인 필요
 - * 감귤, 단감 : 미국 등록 농약기준으로 생산단계부터 농약관리 필요
- 미국 또한 對한 과실 수출시 검역으로 인한 제약이 있어 FTA체결 이후 신속한 검역협상 요구가 예상됨
 - * 사과 : 금지 / 배 : 금지 / 감, 감귤 :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금지

□ 기타 참고사항

- 현재 미국산 배, 사과는 수입위험평가 5단계 진행중으로 수입제한
- 한미 FTA 체결로 감귤보다는 오렌지의 수입량 증가가 예상

2 채소·버섯류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미국		다	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채소쥬스 (2009802000)	2센트/kg	즉시철폐	30	10년 균등철폐
고춧가루 (0904202000)	5센트/kg	즉시철폐	270 또는 6,210/kg	15년 균등철폐
채소 등 조제품(기타 식초,조제) (2001909090)	9.6	즉시철폐	30	5년 균등철폐
야채스프 등 제조용 조제품 (2104103000)	3.2	즉시철폐	18	5년 균등철폐
무 (0706901000)	2.7	즉시철폐	30	10년 균등철폐
새송이버섯(0709594000)	20	5년 균등철폐	_	_
팽이버섯(0709595000)	20	5년 균등철폐	30%	10년 균등철폐

○ 현재 채소류는 對미 수출관세가 크지 않아 즉시철폐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버섯의 경우 5년 균등철폐로 즉각적인 수출확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현지시장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및 업계동향

○ 채소류

- 對미 채소류 수출품목 중 '10년 기준 1백만불 이상은 기타채소종자 (4.7백만불), 채소쥬스(4.4), 고춧가루(2.7), 무(1.3) 등 5품목으로 기존관세율이 낮아 관세 즉시철폐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전망

ㅇ 버섯류

- 버섯류 주요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10년기준 4.0백만불)과 팽이 버섯(3.0백만불)으로 중국산·캐나다산과 경쟁되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시 캐나다산과의 가격격차를 줄임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시장은 유기농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가격 또한 일반버섯보다 3~4배 높아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유기농버섯 생산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

□ 기타 참고사항

○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관세율 보다는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 유지와 검역의 문제 크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이후 빠른 검역협상이 요구

3 임산물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o -	국	대	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 밤 〉				
(0802.40.10/탈각)	_	_	219.4	
(0802.40.20/미탈각)	_	_	219.4	
(0811.90.10/냉동)	3.4	즉시 철폐	30	15년 균등철폐
(2006.00.70/마롱그라세)	8.0	5년 균등철폐	30	
(2008.19.10/조제저장)	_	_	30	
〈 표고버섯 〉				
(0709-59-00/신선)	8.8cents/kg+20%	5년 균등철폐	45(40)	
(0712-39-10/건조)	1.3cents/kg+1.8%	즉시 철폐	45(40)	15년 균등철폐
(2003-90-00/조제저장)	6cents/kg+8.5%	즉시 철폐	20	
〈 감 〉				
(0810.90.25/신선)	_	_	50	15년 균등철폐 15년 균등철폐
(0813.40.10/건조)	1.8	즉시 철폐		13년 판중결폐
〈 목재류 〉				
(4412/합판)	0-8	즉시-10년(7개)	8-12	5-10년
(4411/섬유판)	0-6	즉시-10년(2개)	8	균등철폐 (초기5년×,
(4410/PB)	0	즉시	8	후기5년()

- 단기임산물의 수입은 밤, 표고, 잣, 호도, 송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 원목, 목재칩, 석재류 등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거나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즉시 철폐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및 업계동향

○ 향후수출전망

- 한미FTA 발효 후 5년간의 영향은 미미하나 5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신선표고(28.3%)등은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증가 기대
- 주요 수출품목인 밤은 현재 관세가 없어 영향이 없으나, 중기적으로 신선표고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 신선표고 : 현재 중국산 대비 가격열위(한국산의 약 1/2~3)로 진출애로

□ 기타 참고사항

- 우리측은 미국의 단기임산물에 대한 계절관세는 미적용
- 발효후 양국간 위생검역(SPS)위원회 설치,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4 수산물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미국	대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마른김 (1212-20)	_	_	20	3년 균등철폐	
조미김 (2008-99)	6.0	즉시 철폐	45	10년 균등철폐	
굴(밀폐용기) (1605-90)	4.7	10년 균등철폐	20	즉시철폐	
다랑어(기름담근것) (1604-14)	35	10년 비선형 철폐	20	10년 균등철폐	
오징어(냉동) (0307-49)	-	_	10	10년 비선형 철폐	
넙치(활어) (0301-99)	_	_	10	3년 균등철폐	

- (한국→미국) 미국 수산물 수입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 대부분 낮은 편으로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 미미
- (미국→한국) 한국 수산물 수입관세는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 어종과 유사성이 높은 고등어, 민어, 넙치류, 명태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폐지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미국 주수출품목인 마른김, 오징어(냉동), 넙치(활어), 미역 등은 기존 무관세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가 없음
- 수출증가 가능성 있는 품목은 다랑어(기름담근것),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 등임

〈 다랑어. 굴 수출 증가 전망〉

(단위: 천 달러)

구 분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5년 합계	15년 평균
합 계	374	867	1,086	11,633	776
다랑어(기름담근것)	122	209	263	2,971	198
굴(밀폐용기)	252	658	823	8,663	578

※ 1. 자료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11.8.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작성) 2. 수출증가가 이행기간 완료 이후 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5 음료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국	대학	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 물 〉				
광수와탄산수 (2201100000)	0.26센트/Li	즉시 철폐	8	5년 균등철폐
물(기타) (광수,얼음과눈 이외, 미착색) (2201909000)	_	_	8	5년 균등철폐
착색한 물 (2202101000)	0.2센트/Li	즉시 철폐	8	즉시 철폐
물(기타) (2202109000)	_	_	8	즉시 철폐
〈 음 료 〉				
식 혜 (2202903000)	0.2센트/Li	즉시 철폐	8	10년 균등철폐
기타혼합음료 (2202909000)	0.2센트/Li	즉시 철폐	8	5년 균등철폐

○ 알로에음료 등 기타음료에 대한 관세는 즉시철폐로 협상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향후수출전망

- 당초 관세율이 낮아 수출확대에 직접적인 요인은 안될 것으로 예상
- 한미FTA체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기타 참고사항

- '11년 9월 현재 미국에 기타음료 수출현황
 - ('10. 9) 16,889천불 → ('11. 9) 23,486천불(39.1%↑)
 - * 기타 물(착색, 광수, 미첨가 등)은 80만불 미만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음

6 과자류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미국	대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극		관세율(%)	협상결과	
곡류조제품 (1904.90.01)	14.0	5년 균등철폐	8%	5년 균등철폐	
빵 (1905.90.90)	4.5	즉시 철폐	8%	10년 균등철폐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향후수출전망

- 곡류조제품, 빵류는 對미 수출 100만불 이상 품목으로 관세가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에 의의가 있음
 - * 매년 30%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부진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수출성장률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참고사항(업계의견)

- 과자류는 현재 주요 수출국이 일본, 중국, 미국이며, 미주 지역은 교포시장 중심으로 과자류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 따른 현지 시장진출 여건 조성에 힘입어 수출 확대 기대
- 수입 관세율 철폐에 따른 미국산 과자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내수시장의 국내 제과 업체의 과자류 판매 부진 등으로 수출판로 개척에 좀 더 노력할 계획임

7 소스류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미국		품목		대	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된장/(춘장) (2103-90-1010) (2103-90-1020)	6.4	즉시 철폐	8	10년 균등철폐		
간장 (2103-10-0000)	3	즉시 철폐	8	5년 균등철폐		
고추장 (2103-90-1030)	6.4	즉시 철폐	45	5년 균등철폐		
기타소스(BBQ) (2103-90-9090)	6.4	즉시 철폐	45	5년 균등철폐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향후수출전망

- 된장과 고추장은 현지인 시장 진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주로 교포시장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하락이 수출확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간장 및 BBQ소스는 현지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들과의 경쟁이 심한 상태이므로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확대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참고사항(업계의견)

○ 된장과 고추장 등은 교포시장이 주축을 차지하므로 관세철폐에 따른수출확대 효과는 크기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간장의 경우일본산 수준의 품질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수출이 소폭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나 관세가 3%로 낮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8 면 류

□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

품목	미국		품목 미글			대한민국
(HS Code)	관세율(%)	협상결과	관세율(%)	협상결과		
라 면 (1902-30-10)	6.4	즉시철폐	8	즉시철폐		
국 수 (1902-19-10)	6.4	즉시철폐	8	5년 균등철폐		
냉 면 (1902-19-30)	6.4	즉시철폐	8	5년 균등철폐		
기타파스타 (1902-30-90)	6.4	즉시철폐	8	즉시철폐		

○ 면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기타파스타, 국수 당면 등의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관세 즉시 되는 품목이 대부분임

□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 對미 면류 수출동향

- 면류의 대미수출은 46백만불 수준이며 최근 수출 증가율은 20%이상을 기록하며 있으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에 수출확대 전망
- 품목별 수출동향('10) : 라면 19.7백만불, 국수 10, 기타파스타 10.9, 냉면 2백만불

○ 향후 수출전망

- 한미 FTA체결로 6.4% 관세철폐로 한국산과 경쟁상품인 일본산 면류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면류의 주도적인 수출품은 라면, 국수, 냉면 등으로 한국식품의 매운맛과 전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전파에 따른 수출 증가세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교민마켓 위주의 시장에서 동양계, 히스패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업계에서는 한국면류의 품목다양화를 통해 한국적인 맛과 전통적인 맛의 접목한 품목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출확대 노력

참고 1

양허유형별 주요 대상품목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대미수출액 (백만불)	비중(%)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300MT)
15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 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참고 2

한·미 FTA 체결관련 주요 품목별 업체 의견

업체	품목	내용
А	버섯	새송이, 팽이버섯이 미국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물량은 기존대비 약 10%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
В	김치	미국 현지 로컬브랜드(약 30개)가 난무하여 정상가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관세철폐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므로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С	라면	생생우동 등 몇 개 라면을 제외하고는 LA현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시장 납품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먹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현지 수입업체의 노력과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소비효과 증대 필요.
D	아이스크림	관세철폐로 수출단가가 낮아지면 수출확대기회는 있으나 교포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어 수출확장 여지가 낮음. 미국주류시장 진입을 목표로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인지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집중적 홍보활동 필요.
E	삼계탕	미국은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축산물을 수출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도축장(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미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축산물 시장인 미국에 바로수출할 수 없으나 FTA가 비준되면 향후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음.

참고 3

한·미 FTA 농수산분야 협상결과

가 농산물 분야

- □ (쌀) 협상대상에서 제외
- □ (축산물) 가장 민감한 쇠고기 관세폐지기간 장기화에 노력
 - 쇠고기(관세율 40%) : 15년간 관세폐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 **냉장 삼겹살・목살**(22.5%) : 10년간 관세폐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
- □ (낙농품) 철폐기간을 장기화 조건으로 무관세로 일정물량 제공
 - **혼합분유**(관세율 36%) : 10년간 관세폐지
 - **치즈**(관세율 36%) : 15년간 관세폐지, 무관세 물량 7,000톤 제공
 - 버터(관세율 89%) : 10년간 관세폐지, 무관세 물량 200톤 제공
- □ (고추·마늘·양파) 15년간 관세폐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 (과수) 사과, 배, 오렌지에 대하여는 관세폐지 장기화 또는 계절 관세(성출하기에 현행관세유지) 적용
 - **사과**(관세율45%) : 후지 20년간 관세 폐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배**(45%) : 동양배 품종 20년간,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
 - **오렌지**(50%) : 계절관세 기간(9~2월) 중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 물량(2,500톤) 제공, 비성수기(3~8월)는 7년간 관세폐지
 - **감귤**(온주밀감 : 144%), **맨더린**(144%) : 15년간 관세폐지

나 수산물 분야

- □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 어종과 유사성이 높은 고등어, 민어, 넙치류, 명태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폐지
 - 냉동고등어(관세율10%) : 12년간 관세폐지
 - **냉동 민어**(10%) : 12년간 관세폐지, 무관세물량 1,000톤 (매년 5%증량)
 - **냉동넙치류**(10%) : 12년간 관세폐지, 무관세물량 1,530~3,303톤
 - 냉동 명태(10%) : 15년간 관세폐지, 무관세 물량 4,000~12,263톤

참고 4 │ 한·미 FTA 농수산분야 영향 분석

- □ 최근 여건 및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결과, 한미 FTA로 인해 수입이 8,445억원 증가(연평균)하고, 생산액은 12조 6,683억원 감소 추정
- □ ('07년분석과 비교) 수입증가 효과는 연평균 1,466억원증가, 생산액 감소 영향은 2조 1,998억원 증가

〈 분야별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억원)〉

구분	기존분석('05	5년통계적용)	재분석('08년 통계 적용)		
十七	15년 누적	연평균	15년 누적	연평균	
 농산물	100,470	6,698	122,252	8,150	
수산물	4,215	281	4,431	295	
총 계	104,685	6,979	126,683	8,445	

- ※ 對미 수입 및 생산 감소액 증가 이유
 - 그 간의 농산물 대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추세가 최신 통계에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
 - * 자료원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REI 등 10개 기관

참고 5

주요 품목별 對미국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

품 목	물 량	금액	비중(금액기준)
라 면	6,185	19,786	12.6%
배	10,182	25,413	47.0%
기타조제식료품	1,795	4,631	35.5%
음 료	31,629	25,065	24.4%
주 류	15,241	18,396	5.9%
간 장	3,597	3,170	27.1%
된 장	1,741	2,867	46.9%
고 추 장	2,807	5,078	30.2%
삼 계 탕	0.1	1	0.01%
김 치	868	2,695	2.7%
포도주스	0.4	1	1.0%

자료: KATI, 2010년 수출액 기준

참고 6

미국의 농산물 수입구조

〈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10) 〉

구	품 목	수입액 (백만불)	수입 비중	증감 (10/09)	국가별 수입비중(%)
분	농산물 전체	73,882	100	14.66	
1	커피	3,738	5.06	21.47	브라질(28.5), 콜롬비아(19.6), 베트남(16.2)
2	맥주	3,534	4.78	5.37	멕시코(45.8), 화란(26.9), 캐나다(6.2), 한국(0.06)
3	포도주	3,447	4.66	4.28	이탈리아(32.3), 프랑스(17.1), 호주(16),
4	천연고무	2,360	3.19	130.47	인도네시아(70.6), 태국(13.3), 말레이시아(5.3)
5	토마토	1,798	2.43	28.12	멕시코(82.7), 캐나다(16.3), 과테말라(0.4)
6	바나나	1,789	2.42	13.44	과테말라(25.9), 에콰도르(24.3), 코스타리카(18.9)
7	보드카	1,683	2,28	12.59	프랑스(39.0), 스웨덴(25.3), 화란(13.9), 러시아(8.4)
8	기타 조제식료품	1,566	2,12	15.86	캐나다(33.7), 멕시코(10.9), 태국(7.6), 영국(5.0), 한국(2.2)
9	빵, 케이크 등 베이커리제품	1,520	2.06	15.49	캐나다(46.2), 멕시코(18.9), 이탈리아(4.9) 한국(1.7)
10	위스키	1,338	1.81	14.82	영국(74.4), 캐나다(17.1), 아일랜드(7.9),
11	포도	1,282	1.74	22,34	칠레(57.7), 멕시코(36.2), 페루(3.8), 한국(0.06)

자료 : Global Trade Atlas

참고 7 한미 FTA 추진현황

- '06. 2월 출범 선언 후 8차례 공식 협상과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07. 4. 2)되었으며, '07. 6. 30 정식서명
- '07.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미 FTA 보완대책 발표
- '09. 4. 2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 '10. 11. 30~12.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개최(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자동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추가협상 타결
- '11. 6. 3,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11. 11. 22, 국회 본회의 비준안 통과
- '12. 1. 1 한·미 FTA 발효 예정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1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72 aT센터

문 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 1399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aT 수출개발처의 각 품목담당팀(농산수출팀, 수산임산수출팀, 식품수출팀)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참고 자료는 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에서 정리하여 취합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위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